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94
----------	---------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명시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나. 관련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정비

- 제6조3항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7. 10. 19. ~ 2017. 11. 8.(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기금존속기한 연장 적정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7.11.16.)
-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사.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중 “임시 회의”를 “임시회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 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 <u>022년 12월 31일</u> ----- ----- -----.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u>수행</u>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수행할</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4(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u>임시 회의</u>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의4(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임시회의</u> ----- -----.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 ② (생략) ③ 「 <u>지방재정법</u> 」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방회계법</u> 」 ----- -----

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동 및 결산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청소행정과 이명아
연 락 처	02-3153-9226